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</u>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신형식

전화 02-2204-4201 / 팩스 02-2204-4844

보도자료 2021, 11, 26,(금)

제 목

###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-19 집단감염 사건 수사 결과

불기소처분 사건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2호)
  - ☑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 - ☑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  - ※ 2021, 11, 25,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- ▶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인권·명예보호전담부(부장검사 안동완)는 서울동부
  구치소 코로나-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접수된 9건의 고발 사건을
  직접 수사하여 금일 혐의없음 처분하였음
-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-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실시된 법무부특정감사, 질병관리청 역학조사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의조사·감사 등 자료, 관련 소송 자료, 서울동부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종합적으로 검토·분석하고,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근무 직원들을 조사한결과, 부실·지연 대응 등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판단하였음
-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**일부 미흡**한 조치(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 미지급, 고열증상자 진단검사 지연)가 **확인**되었으나,

- ①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(기 지급 마스크 착용 및 마스크 판매 지속, 고열증상자 격리 조치 등)는 취해졌고, ② 정원 초과의 서울동부구치소 상황,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,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,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, 코로나-19 집단감염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, ③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, 이러한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

# 1 피의자

● A○○(前 국무총리), B○○(前 법무부장관), C○○(前 서울동부구치소장) 등 11명

# 2 주요 피의사실 요지

- '20. 11.~'21. 1.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-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,
  - 공모하여 전수검사 지연 실시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즉각적인 코로나 -19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응함[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, 직무유기,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
  - 공동하여 방역물품 지급 미흡 등 코로나-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, 수용자들 및 직원들 합계 1,205명으로 하여금 코로나-19 양성 판정을 받도록 하고, 그 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[업무상 과실치상, 업무상과실치사]
  - 공모하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코로나-19 확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함[**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**]

## 3 수사 경과

- '21. 1. ~ 7. 서울동부지검, 고발장 9건 접수
- '21. 3. ~ 5. 관련 소송 자료, 교정당국 제출 자료 등 검토
- '21. 6. 법무부 교정본부 담당자 조사
- '21. 7. ~ 10. 국가인권위 결정, 법무부 특정감사,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자료 등을 압수하여 분석, 비교 사례 판결문 분석 등 법리 검토
- '21. 11.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들 조사
- '21. 11. 26. 혐의없음 처분

# 4 불기소 이유 요지

#### ① 코로나-19 유입 내지 확산 원인

-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-19 **유입 원인 특정 불가** 
  - '20. 12. 18.경 <u>1차 전수검사 결과 전체 수용동에 걸쳐 수용자 185명</u>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, <u>역학조사 결과 초기 유입경로는 최소 3개 이상</u>으로 추정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입 원인을 특정할 수 없음
    - ※ 역학조사 결과, ① 신규입소자를 통한 유입, ② 수용자 외부 활동(출정 등)을 통한 유입, ③ 근무자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언급됨
  - '20. 11. 27.경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과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, <u>최초 양성 판정 교도관은</u>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

#### ●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-19 확산 원인 특정 어려움

- 1차 전수검사 당시 이미 전체 수용동에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퍼져 있었고,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-19의 특성에 비추어 확산 원인의 특정이 어려움
  - ※ 역학조사 결과, ① 정원초과 수용, ② 3밀(밀집, 밀폐, 밀접) 환경, ③ 공동생활,
    - ④ 무증상 잠복기 상태의 신규입소자 전방, ⑤ 출정 과정에서의 노출 및 전파,
    - ⑥ 운영지원작업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언급됨
- 1차 전수검사 전 의심증상을 호소한 양성 판정 수용자 56명을 추적·분석한 결과, 위 56명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수용자 177명 중 17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,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-19의 특성을 감안할 때, 감염의 선후관계 특정이 어려움
- 위 수용자 177명 수용 거실 모두 외부 출정자가 존재하여 구치소 외부 감염 가능성이 있는바, <u>감염 경로 특정도 어려움</u>

# ② 고의, 과실, 인과관계 및 은폐 사실 인정되지 않음

- 직권남용 등의 고의 내지 전반적 부실 대응의 과실 인정 어려움
  - 관련 지시 등 공문, 조치 내역 등에 의하면,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방역당국과 상의 하에 감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(격리, 이송 등) 등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, 고의(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) 내지 전반적인 부실 대응의 과실(업무상과실치사상) 혐의 인정 어려움

### ● 개별 조치 관련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

- 고발인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(전수검사 지연, 격리·이송 등 격리 조치 지연, 대강당 집합, 방역물품 지급 미흡 등) 관련하여,

- 법무부 특정감사, 질병관리청 역학조사,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의 조사·감사 등의 자료, 관련 소송 자료, 서울동부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압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·분석한 결과,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등에 따라 각종 조치(감염 의심자 진단검사 및 격리, 마스크 지급, 외부인 출입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, 확진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 조치,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마련 등)를 취한 사실, 최초 양성 판정 수용자가 발생한 후 방역당국과 상의 하에 각종 조치(수용자 3단계 분류, 전수검사, 소독, 분리 수용, 이송 등)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,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,
- 서울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의 일부 미흡한 조치(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 미지급, 고열증상자 진단검사 지연)가 확인되었으나,
- 수용자들이 기존에 지급된 마스크를 착용하였고, 수용자들 상대 마스크 판매, 고열증상자 격리 조치 등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졌으며,
- 정원 초과의 서울동부구치소 상황,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,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,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, 코로나-19 집단감염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
-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, 이러한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
  - ※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, 설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(대법원 2019도18182 판결 등)

### ● 은폐 지시 혐의 인정 어려움

- 일정기간 동안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로, 해당 기간 동안의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,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의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 인정 어려움